

**기능성 디자인의 상표권 보호 한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(유럽사법재판소)**  
**(Simba Toys GmbH & Co. KG v EUIPO, C-30/15 P)**

**1. 소송의 개요**

Rubik's Cube의 관리회사 세븐타운즈는 1999년 유럽연합지식재산청(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, EUIPO)에 큐브의 입체적 형태를 상표로 등록했음. 독일 완구 업체 심바토이즈는 이 형태가 퍼즐의 회전 기능을 구현하는 본질적 요소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, EUIPO와 일반법원(General Court)은 이를 기각함.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기능적 요소는 상표로 보호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며, EUIPO의 등록 결정을 취소함. 이 사건은 상표권이 기술적 기능을 독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임.

제품 디자인과 기능성의 경계에서 상표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, 글로벌 IP 전략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.

항목	내용
사건명	Simba Toys GmbH & Co. KG v EUIPO
관할법원	유럽사법재판소(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)
사건번호	C-30/15 P
선고일	2016년 11월 10일
당사자	원고: 심바토이즈(Simba Toys GmbH & Co. KG)
	피고: 유럽연합지식재산청(EUIPO), 세븐타운즈(Seven Towns Ltd)
주요 쟁점	퍼즐의 3D 형태가 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지, 기능적 요소가 상표권 등록을 제한하는지 여부

**2. 주요 법적 쟁점**

**1) 기술적 기능과 상표권의 경계**

- 법원은 EU 상표규정(Regulation No 40/94)에 따라, 상표법은 기술적 해결책이나 기능적 특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함.

- 법원은 Rubik's Cube 의 회전 기능이 형태에 내재된 구조적 요소에 의해 구현되므로, 상표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함.

## 2) 비가시적 요소의 고려

- 법원은 일반법원이 큐브의 외형만 고려하고 내부 회전 기능을 무시한 점을 지적하며,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형뿐 아니라 제품의 기술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.

## 3) 출처 표시 기능 주장 배척

- 세븐타운즈는 큐브 형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으나, 법원은 기능적 구조가 출처 표시보다 퍼즐 작동에 본질적이라고 보아 이를 배척함.

## 3.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

### 1) 기능적 디자인은 상표로 보호 불가

- 제품의 작동 원리나 기능을 구현하는 형태는 상표가 아닌 특허·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함.

### 2) IP 전략에서 권리 구분 필요

- 콘텐츠 상품(캐릭터 굿즈, 퍼즐, 게임기기 등)은 디자인권·저작권·상표권을 목적별로 구분해 등록해야 함.

### 3) 경쟁 제한 리스크 관리

- 기능적 요소를 상표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, 경쟁 제한으로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.

### 4) 글로벌 상표 등록 시 EU 판례 고려 필요

- EU 시장 진출 시 기능성 관련 상표 등록은 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, 해당 상표가 기능성 관련인지 사전 검토가 필수임.

## 5. 참고 문헌

-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. (2016, November 10). Press Release No. 122/16: Judgment in Case C-30/15 P Simba Toys GmbH & Co. KG v EUIPO. ([링크](#))